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2024. 4. 30.(화) 11:00 < 5.1.(수) 조간 > 배포 2024. 4. 30.(화)

수소특화단지 지정 공모 개시

- 올해 하반기 수소특화단지 최초 지정 목표

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안덕근, 이하 산업부)는 5월 1일(수)부터 「수소특화단지 지정 공모」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. 특화단지 지정을 희망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는 6월 28일(금) 18시까지 신청서, 육성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.

산업부는 지자체가 제출한 육성계획서를 중심으로 수소산업 집적도, 기반시설 구축 여부, 지역산업 연계 가능성,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, 국무총리 주재 수소경제위원회 심의·의결을 거쳐 2024년 4분기 중 수소특화단지를 최초 지정할 계획이다.

「수소법」상 지원제도인 수소특화단지와 별도로 수소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작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올해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이며*, 산업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예산사업인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법적 지원제도인 수소특화단지를 통합·연계하여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촉진하고자 한다.

* 수소 저장·운송 클러스터(강원 동해·삼척/'24~'28/총사업비 3,177억원)
수소 연료전지발전 클러스터(경북 포항/'24~'28/총사업비 1,918억원)

한편, 수소특화단지로 바로 지정은 어렵지만, 세계 1등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산업 집적화가 필요한 지역은 사전기획 연구용역(2개 지역, 각 2.5억원 지원) 등을 통해 예타사업 추진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.

이를 위해 「수소법」시행령을 개정('24.4.9)하여, 수소산업 집적지만 지정이 가능하였던 지정요건을 집적지 외에 집적화 가능성이 높은 지역도 지정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.

산업부는 4월 19일(금) '수소특화단지 추진계획 설명회'를 개최하여 지정계획, 일정 등을 지자체에 안내한 바 있으며, 5월 중 '평가계획 실무설명회'를 개최하여 평가기준, 육성계획서 작성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.

담당 부서	수소경제정책관 수소산업과	책임자	과 장	박한서 (044-203-3970)
		담당자	사무관	박희영 (044-203-3975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참고 1 **수소특화단지 공고 계획(안)**

1. 추진근거

○ 「**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**」 제22조(수소특화단지의 지정 등)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~제31조

2. 주요내용

○ (**신청주체**)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

○ (**신청기간**) 2024.05.1(수) ~ 06.28(금) 18:00

○ (**제출서류**) 특화단지 지정신청서, 육성계획서, 관련 증빙자료

○ (**신청방법**)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

* 접수처 : 에너지기술평가원 수소에너지실

3. 향후일정

○ (**검토·평가**) 지자체의 **특화단지 육성계획서**를 기반으로 사전검토(에기평), **평가위원회 평가** 등 진행 (발표평가 추진)

○ (**심의·의결**) **수소경제위원회** 심의·의결을 거쳐 **특화단지 지정**

< 추진일정(안) >

수소특화단지 지정 신청		제출서류 검증		검토		심의		관보 고시
육성계획서 수립·제출	⇨	제출서류 확인 및 지정요건 검증 (현장조사 등)	⇨	목표, 추진계획, 기대효과 등 타당성 검토	⇨	수소특화단지 지정 상정안건 심의·의결	⇨	특화단지 지정 고시 및 결과통보
광역자치단체장 →산업통상자원부		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(에기평)		평가위원회 (시행령 제30조)		수소경제 위원회		산업통상자원부 →광역자치단체장
~6月 말		7月		7~8月		9月 중		10月 중

* 상기 일정은 단계별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

참고 2 수소특화단지 개요

□ 개념 : **수소사업자 및 지원시설의 집적화**와 **수소전기차·연료전지 등의 개발·보급**을 지원하기 위해 **지정하는 지역** (수소법 제22조)

□ 지정요건 (수소법 시행령 제28조)

○ 수소산업 사업자 간 **집적화를 이루고 있거나 집적화 가능성이 높은 지역**일 것

○ **기반시설**(교통, 통신 등)**이 갖춰져 있거나 계획*에 포함**돼 있을 것

*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정 계획

○ 지역의 **주요 산업**과 **수소산업의 연계 발전 가능성**이 높을 것

○ 국가 수소산업 전반에 미치는 **파급효과가 높을 것**

○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수소특화단지 지정요건 고시 가능

□ 지원규정 : 수소특화단지에 대한 **포괄적 지원근거**(수소법 제22조*) 명시

* 수소산업 집적화를 추진하고 수소전기차·연료전지 등의 개발·보급 지원을 위해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자금 및 설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□ 지원방안 (예시)

기반시설 구축	기업 입주·유치 지원	기업 성장·투자 지원
▶대규모 지원 인프라 구축 사업 기획 및 예타 조사 지원	▶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보조금 우대(2% 가산)	▶특화단지별 맞춤형 성장 지원사업 기획 및 추진 * 수소법상 시범사업(제24조)으로 지원 검토
▶수소특화단지 전용 인프라 구축 예산 확보 검토	▶산업단지 산업용지 계약시 수의계약 허용(원칙 : 경쟁입찰) * 산업단지지정권자(국토부) 승인시 수의계약 가능 → 특화단지 수의계약 적용 국토부 협의	▶특화단지 입주기업 기술 지원 수요 우선 검토 * R&D, 세제(조특법상 신성장·원천기술 반영 검토) 지원 등